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9. 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8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147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9. 9. 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가. 개정이유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절차 등을 규정한 보조금 관리조례 운용과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과 법률을 용어 순화 반영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 내용

- (1) 현행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
- (2)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4조의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로 변경
- (3) 법률을 용어 순화를 반영, 조례 전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 (가) “기타”를 그 밖에”로
- (나) “교부지령”을 “교부결정통지”로
- (다) “타용도”를 “다른 용도로”
- (라)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명금길)

○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보조대상, 교부절차 등을 규정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규에 맞도록 우리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문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된 주요내용>

- (1) 안 제4조에서는 안 제1조 보조금 관리조례 설치목적의 근거 법규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사업의 대상을 규정한 상위법규 조문 변경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개정하였고
- (2) 안 제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기타”를 “그 밖에”로 “타 용도”를 “다른 용도”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등으로 변경하여 띠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과 문구가 정비 되었기에 본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고 일부 용어와 문구를 수정하므로서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후속조치로서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